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울 산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5구합5423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
변 론 종 결	2015. 12. 10.
판 결 선 고	2016. 1.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0. 10. 원고에게 한 취득세 13,306,710원 및 농어촌특별세 1,330,67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가. 원고는 2010. 6. 8. [redacted]군 B 대 614.80㎡ 및 위 지상 6층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지방세법상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200,000원(농어촌특별세 포함)을 신고한 후, 2010. 7. 7. 위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C은 2009. 6. 30.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업을 영위하고 있었는데(이하 이 사건 부동산 2층을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 2011. 8. 19. E가 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고, 2014. 1. 6. F이 다시 위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 원고는 2013. 12. 16. F과의 사이에 임대차 기간은 2014. 1. 1.부터 2년간, 월 차임은 75만 원으로 하여 이 사건 주점을 F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4. 5. 22. 재산세 고급오락장(유흥주점) 일제조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영업장 전용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객실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50%를 초과하며, 유흥접객원을 수시로 고용하는 등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2014. 9. 11. 원고에게 취득세 과세예고를 하였다.

라. 이에 원고가 객실 중 1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주점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자, 피고는 2014. 9. 24.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점을 재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원고가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객실(이하 '이 사건 쟁점객실'이라 한다)은 2014. 5. 22. 조사 당시 노래방 모니터가 구비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다가, 2014. 9. 24. 재조사시 모니터가 철거되기는 하였으나 모니터를 연결하는 전선이 벽면에 그대로 붙어있고 소파가 놓여 있는 등 위 2014. 5. 22.자 조사 당시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았고, 바닥에는 맥주 6박스와 재활용 분리수거 그물망 정도가 적치되어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마. 피고는 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쟁점객실이 창고로 사용되고 있다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2014. 10. 10.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지방세법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 및 농어촌특별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14,637,380원(= 취득세 13,306,710원 + 농어촌특별세 1,330,6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1. 28. [redacted]광역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1. 23. 기각결정을 받았다.

사.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면적은 117.78㎡이고, 객실 수는 4개이며, 객실 총면적은 64.15㎡이다.

아. 피고의 소속 공무원이 2014. 5. 22. 이 사건 주점에 출장한 결과 이 사건 주점에서 영업 중인 객실의 수가 4개인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이 사건 주점에서 계산 업무를 맡고 있던 F의 조카 G(당시 만 28세)은 '이 사건 주점의 객실 수는 4개이고,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접객원을 고용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작성한 '2014년 고급오락장 조사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자로서 서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점의 임차인인 F은 유흥접객원을 둔 사실이 없고, G이 작성한 확인서는 사실관계를 잘 알지 못한 채 서명한 것에 불과하며, 객실 4개 중 1개는 창고로 사용하고 있어 객실 면적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하므로, 이 사건 주점은 고급오락장에 해당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하지 않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제4호는 고급오락장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취득세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나목에 의하면, 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여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로서 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를 초과하는 영업장소를 유흥주점영업장인 고급오락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들로부터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점의 객실면적이 고급오락장으로 분류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실 및 F이 유흥접객원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주점의 영업장 전용면적은 117.78㎡로 100㎡를 초과하고, 객실 4개의 면적 합계는 64.15㎡로 위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58.89㎡)을 넘어선다.

② 원고의 조카인 G은 피고의 조사 당시 만 28세의 성인이었고,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이 사건 주점을 조사하는 목적 등에 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이 사건 주점이 비상시적으로 접객원을 고용하고 있고, 객실은 4개라는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바, 원고와 G의 관계에 비추어볼 때 G은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G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문서에 서명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3-17

③ 이 사건 쟁점객실은 2014. 5. 22. 조사 당시 영업이 가능한 상태였고, 이후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피고가 재조사를 실시한 2014. 9. 24.경에도 모니터만 철거하였을 뿐 다른 객실과 큰 차이점이 없어 언제든지 재영업이 가능하였던 상태로 보이는바, 이 사건 쟁점객실은 객실 면적에 포함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점이 유흥주점영업장으로서 지방세법상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행하여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임해지

판사 우정민

판사 이수주